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
특별회계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63
----------	-----

2020. 3. 24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3월 20일

-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남일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의 회계관계직원 명칭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,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(제5조)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
 - 경리관 ⇒ 재무관, 분임경리관 ⇒ 분임재무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5조 중 ‘경리관’을 ‘재무관’으로, ‘분임경리관’을 ‘분임재무관’으로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용하는 명칭의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조례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
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·관리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징수관·경리관”을 “징수관·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
항 제2호 중 “분임징수관·분임경리관”을 “분임징수관·분임재무관”으로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징수관·경리관</u> :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</p> <p>2. <u>분임징수관·분임경리관</u>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</p> <p>3. 지출원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</p>	<p>제5조(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징수관·재무관</u>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</p> <p>2. <u>분임징수관·분임재무관</u>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</p> <p>3. 지출원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</p>

관 계 법 령

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11조의7(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)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·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.

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
- 2.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사업비
- 3.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

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회계관계직원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가. 징수관, 재무관, 지출원, 출납원,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
- 나.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